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를 신설하고,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은 전직시험 없이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전문경력관 정원 14명(가군 7명, 나군 7명)을 연구직 정원 14명(연구관 7명, 연구사 7명)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4급 또는 총경 이하 “4,328”을 “4,342”로, 전문경력관 “33”을 “1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6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4급 또는 총경 이하	<u>4,328</u>	<u>4,342</u>	+14
전문경력관	<u>33</u>	<u>19</u>	-14
·	·	·	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2